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77

발의연월일: 2025. 2. 14.

발 의 자:이종배·서지영·김소희

이종욱 • 김용태 • 김재섭

이만희 · 김위상 · 권영진

김성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 정부는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심각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등 저출생·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.

이에 예산 및 기금이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저출생·고령화인지 결산서 및 저출생·고령화인지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·제2항제2호의3 신설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

안」(의안번호 제817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제2항제2호에"를 "같은 항 제7호의3에 따른 저출생·고령화인지 결산서, 제2항제2호에"로, "기금결산서 및 같은 항"을 "기금결산서, 같은 항"으로, "기금결산서의"를 "기금결산서 및 같은 항 제2호의3에 따른 저출생·고령화인지 기금결산서의"로 한다.

7의3. 저출생·고령화인지 결산서

2의3. 저출생·고령화인지 기금결산서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저출생·고령화인지 결산서 및 저출생·고령화인지 기금결산서 의 첨부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출생·고령화인지 결산서의 첨부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출생·고령화인지 기금결산서의 첨부는 2026회

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15조의2(결산보고서의 부속서 | 제15조의2(결산보고서의 부속서 |
| 류)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 | 류) ① |
| 입세출결산(기금의 수입지출결 | |
| 산은 제외한다)에는 다음 각 | |
|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. | |
| 1. ~ 7의2. (생 략) | 1. ~ 7의2. (현행과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7의3. 저출생·고령화인지 결산 |
| | <u>서</u> |
| 8. ~ 12. (생 략) | 8. ~ 12. (현행과 같음) |
| 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| ② |
|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| |
| 야 한다. | |
| 1. ~ 2의2. (생 략) | 1. ~ 2의2. (현행과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2의3. 저출생·고령화인지 기금 |
| | <u>결산서</u> |
| 3. (생 략) | 3. (현행과 같음) |
| ③ • ④ (생 략) | ③・④ (현행과 같음) |
| ⑤ 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 | 5 |
| 결산서,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 | |
| 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, | |
|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 | 같은 항 제7호의3에 따른 저출 |
| 금결산서 및 같은 항 제2호의2 | 생·고령화인지 결산서, 제2항 |
| 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<u>기</u> | <u>제2호에기금</u> |
| 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 | 결산서, 같은 항 |

| 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| <u>기금결산서 및</u>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한다. | 같은 항 제2호의3에 따른 저출 |
| | 생·고령화인지 기금결산서의- |
| | |
| | |